

● **환경부령 제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를 “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 를 “확인해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업종별” 을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 을 “제7항” 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 를

각각 “제1항제3호” 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를 “제35조제1항제3호”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한다.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 를 “확인해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체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검토 및 위험도·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별표 2 제3호가목2) 후단 중 “함량(%)을 추가로” 를 “함량(%)을” 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3) 중 “가입여부 및” 을 “가입여부,” 로 한다.

별표 5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6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7 제2호카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사항란 중 “업종” 을 “영업” 으로 하며, 같은 호 처목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 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1호” 로 하고, 같은 호 커목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항제13호” 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 로 한다.

별표 12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7호 중 “영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를 “영업 재개 신고” 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35호서식 제2호 중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을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정해진 기한 내(   년   월   일)에 검사를”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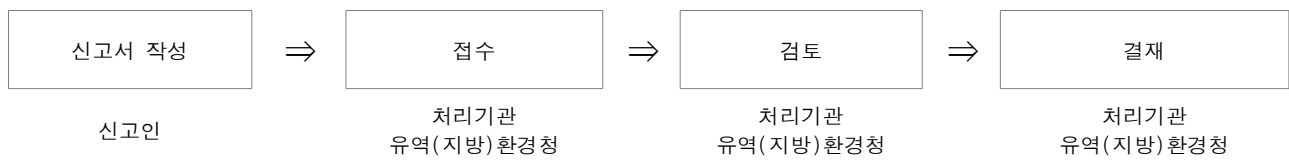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별지 제42호서식의 표의 ⑪ 다음에 ⑫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 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	----------------------------------------------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전자결재”를 “전자결재”로 하고, 같은 쪽 중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한다.

1.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제5항”으로,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중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하고, 같은 뒤쪽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중 “취급시설”을 “취급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52조의2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휴업  
 [ ] 폐업  
 [ ] 가동중단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 ] 휴업 [ ] 가동중단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가동중단 사유				
	가동중단(재개) 취급시설				
	휴업·폐업, 가동중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시설을 ([ ] 휴업·[ ] 폐업·[ ] 가동중단)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4. 사후 신고 사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고인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42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